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야 법안비교를 중심으로 -



2004. 12. 1

여의도연구소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요 약

【 신문자유법의 개정방향 】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언론산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2003년 현재 집계가능한 14개 일간지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2조가 넘는 액수이며, 이는 기타 일간지와 지방지 등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는 물론,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법안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Global Standard에 적합하며,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정했음.
- 이에 따라서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운전기 보유 등의 시설 기준을 완전 삭제하였으며,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신문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음.

- 세계적인 추세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신문간 인수합병 역시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음.
-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토록 했으며,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 우수인력의 양성, 신문의 품질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언론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

- 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절차나 업무에 관한 세분화된 조항이 없어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언론분쟁의 중재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형법 등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이에 언론중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언론중재에 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된 것임.

1. 법률의 ‘명칭’을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으로 개정

여러 법률등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는 제도·절차 규정들을 단일의 법률에 정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제작·반포·판매·방송금지가처분 등을 포괄하였음.

2. 자율적 ‘언론분쟁조정인’ 제도를 도입

자율적 기관으로서 사내에 1인 이상의 ‘언론분쟁조정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언론분쟁조정인의 역할은 당해 언론의 보도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 확인하여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등의 책임 있는 자에게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하였음.

3.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었음.

또한 중재위원회를 40~9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분의 2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4분의 1은 15년 이상 언론에 종사한 자, 4분의 1은 언론학 및 언론 관련 법학을 10년 이상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자 등으로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음.

4. 기존의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구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기존 정간법과 여당안은 구분없이 '반론보도청구'만을 규정하여 적용의 모호함이 있음. 따라서 보도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어 청구하도록 하였음.

5. 기존의 '중재'를 '조정'으로 대체 정의, '조정전치주의' 명시

즉 기존 정간법의 '중재'를 일부조항의 수정을 거쳐 '조정'으로 대체 정의하였고, '조정전치주의'를 명시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현행 정간법에서 유용한 내용들은 그대로 존치하되 그동안 불

명확하거나 절차상 모호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언론분쟁으로 인한 조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음.

【 국가기간방송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

- 현 방송법에도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담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KBS를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시켜내고,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처럼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내는 국가기간 방송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이에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현행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법을 분리,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공사법을 포함한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된 것임.

1. 법률의 ‘명칭’을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로 제정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인 KBS, EBS를 방송법 체계로부터 분리시켜 경영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2. ‘경영위원회’ 제도 도입

경영위원회는 ‘**공익을 위한 수탁기관**’ (public trustee)으로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이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집행기관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KBS 자체의 위상과 성격을 지킴으로써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3.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관의 명확한 분화를 제도화

경영위원회는 공익의 수탁자로서 KBS가 시청자로부터 거두는 수신료 재원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위상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사장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경영 방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단순한 집행 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소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었음.

4. 경영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힘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추천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위원구성을 하도록 하였음. 다만, 특정 교섭단체의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효율적 경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집단에서의 추천이 2/3를 넘도록 하였음.

5. 국제적 수준의 순수 공영방송으로 재원 구조를 개편

KBS의 재원은 시청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방송수신료가 주가 되도록 하였음. 아울러 수신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현재의 방송광고 수입 비중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6.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준조세적 성격인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하였음. 또한, 감사원과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예결산 승인이 되도록 예결산 검증절차를 두었음.

7. '수신료'의 책정은 경영위원회에서,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재정수요 규모를 조사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되, 이를 공사가 부과 징수토록 하였음. 각 방송사 예산규모의 적절한 공적 재원 비율의 확보를 위해 수신료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 EBS의 공영성을 강화하였으며, 예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되,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EBS는 이사회가 공익의 수탁자로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며,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EBS의 예산 편성과 결산 승인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KBS의 방송수신료를 EBS의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법적 문제점을 '국가기간방송'의 틀속에서 KBS, EBS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결토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KBS를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 자율성의 대폭 확대 및 책임성의 강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방송으로 위상을 강화시켜 내도록 만든 법안이 '국가기간 방송법'임.

목 차

I 여당 신문법 및 한나라당 신문자유법

1. 등록제 VS 신고제
2. 시설기준
3. 시장지배적 사업자
4. 신문·방송 경영
5. 신문간 인수합병
6.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7. 독자 권익보호
8. 부당거래행위 금지
9. 광고제한 규정
10.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11. 신문발전기금 설치
12. 신문발전기금 관리

II 여당 언론피해구제법 및 한나라당 언론중재법

1. 법률의 명칭
2. 내부 심의기구 + 고충처리인 VS 언론분쟁조정인
3.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4. 중재절차 및 구성
5.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6. '중재' 및 '조정', '조정전치주의'
7. '손해배상청구권'
8. 시정권고
9. 언론피해상당소

III 국가기간방송법

1. 법률의 명칭
2. 경영위원회 제도
3. 자원구조개편
4. 신규사업
5. 통일방송
6. EBS

I 여당 신문법 및 한나라당 신문자유법

◇ 열린우리당 :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신문법)

◇ 한나라당 : 신문등의자유에관한법률(신문자유법)

○ 여당의 신문법은 1980년에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음.

○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함.

1. 등록제 VS 신고제

○ 여당안과 현행 정간법은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에 보장된 신문·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보다 ‘신고제’가 바람직함.

○ 한나라당안은 기존 정간법에서의 정간물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등록제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였음.

2. 시설기준

○ 여당안은 정간법의 ‘시설기준’에서 운전기 보유조항만을 삭제하고, 인쇄시설의 보유 혹은 임대계약 조건은 그대로 사용함.

○ ‘시설기준’ 규정은 신문의 경량화, 인터넷신문 등의 활성화라는 언론환경의 변화에 뒤쳐진 조항임.

- 한나라당안은 시설기준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였음.

3. 시장지배적 사업자

- 여당안은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음.
- 타 업종과의 차별성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겸영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예외적 사례 외에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음.

3. 신문·방송 겸영

- 여당안은 겸영을 허용하지 않음.
-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통한 미디어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점유율’을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하여 공개한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총 발행부수중 유가 및 무가로 판매 또는 배포된 부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방송사 지분의 10%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4. 신문간 인수합병

- 여당안은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음.
- 유럽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인수합병시에만 조건부로 시장점유율을 제한

하고 있어,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일부 수용하여 인위적 시장점유율 증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음

-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다른 신문을 인수합병할 수 있음. 다만 합병 당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5.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 여당안은 의무적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의 의무화는 편집권 독립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편집권 간섭으로 위헌적 요소임.
- 한나라당안은 노사협의를 의해 자율적으로 편집규약을 규정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독자 권익보호

- 여당안은 의무적으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이상 회의를 통해 편집,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하도록 함.
- 의무적인 독자권익위원회는 편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이를 자율로 하였음.

7. 부당거래행위 금지

- 부당거래행위를 위한 무상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여당안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이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우려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공정거래법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타 업종과 차별이 없고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도 없음.

8. 광고제한 규정

- 여당안은 광고와 기사의 명확한 구분을 의무화하도록 한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광고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할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언론기본법에서도 포함시키지 못했던 광고비율의 50% 이하 제한 규정을 넣었음.
- 광고 게재 거부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광고제한 규정은 편집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9.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 여당안은 신문등의 발행·판매·인쇄부수, 구독료,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50% 이상 지분 소유자 개인별 내역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함.
- 이는 신문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한 관치언론화 우려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일간신문의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내역에 관한 공개는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하여 하며, 신문부수공사재단은 신문등의 발행인의 참여로 설립·구성하고, 신문부수공사재단의 조직, 운영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

10. 신문발전기금 설치

- 여당안은 정부출연금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진흥원을 통해 관리하고,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진흥, 유통구조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이는 국고를 사용하여 일부 신문들의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며, 공정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신문발전기금의 주재원을 국고로 하되,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금은 유통구조의 개선, 우수인력의 양성, 신문의 품질향상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11. 신문발전기금 관리

- 여당안의 언론진흥원은 9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추천 2명, 언론학계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독립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으며, 그 역할을 신문발전기금의 운용,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함.
- 이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규제가 우려됨.
- 한나라당안의 신문발전기금 관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문협회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2명으로 했으며, 역할은 신문발전기금의 운용으로 한정.

II 여당 언론피해구제법 및 한나라당 언론중재법

◇ 열린우리당 :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 한나라당 :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 여당의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한나라당의 언론중재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중재관련법을 통합하여 중재제도의 현실적 개선과 공정한 중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1. 법률의 명칭

- 여당안(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언론이 중재의 당사자일 뿐 가해자가 아님에도 명칭부터 언론이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처럼 묘사되어 있음.

2. 내부 심의기구 + 고충처리인 VS 언론분쟁조정인

- 여당안은 고충처리인 제도와 보도 및 광고에 대한 심의 기구를 의무화함.
- 이는 신문사의 자율적인 사안까지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음.
- 한나라당안에서는 자율적 기관으로서 사내에 1인 이상의 ‘언론분쟁조정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3.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여당안은 중재위원의 총수를 60~110명으로 하며, 법관 20% 이상, 변호사 20% 이상, 언론사 직원 출신(노조출신 등) 2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이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실제로 위촉주체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노조와 시민단체만으로도 60%를 구성할 수 있음.
- 한나라당안은 중재위원회를 40~9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분의 2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4분의 1은 15년 이상 언론에 종사한 자, 4분의 1은 언론학 및 언론 관련 법학을 10년 이상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자 등으로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음.

4. 중재절차 및 구성

- 여당안은 중재절차에 대한 고민없이 정간법 제3장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손해배상청구’와 ‘시정권고 신청’ 관련 내용만 강화하였음.
- 이는 법 제정의 목적이 언론탄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한나라당안은 정간법상 모호한 신청 및 중재절차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적효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5~7번항 참조)

5.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기존 정간법과 여당안은 구분없이 ‘반론보도청구’만을 규정함.
- 이는 적용의 모호함이 있음.
- 한나라당안은 보도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로 나누어 청구하도록 하였음.

6. '중재' 및 '조정', '조정전치주의'

- 여당안은 기존 정간법의 '중재'를 그대로 원용함.
- 한나라당안은 기존 정간법의 '중재'를 일부조항의 수정을 거쳐 '조정'으로 대체 정의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명시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정간법에 동일한 성격의 내용 있음)
- 또한 정간법상 내용이 모호한 '증거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한나라당안의 '중재'는 당사자간에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함.

7. '손해배상청구권'

- 여당안은 중재부에서 손해배상 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배상액수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법원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아직은 적절하지 못하며,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음.
- 한나라당안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

8. 시정권고

- 시정권고는 중재위의 권한임.
- 여당안은 시정권고 신청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한 특정매체에 대한 정부와 친여 시민단체의 무차별적 시정권고 신청이 우려되며, 중재신청과 중복의 소지도 있음.
- 한나라당안은 시정권고 신청에 대한 조항이 없음.

9. 언론피해상담소

- 여당안은 ‘언론피해상담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고를 지원받아 언론피해 상담, 중재신청·피해배상청구·소송절차 등에 대한 지원, 언론피해 관련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음.
-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따로 설치하여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언론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중복·낭비가 우려됨.
- 한나라당안은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기관이 없음.

Ⅲ. 국가기간방송법

□ 제정 취지 및 목적

- 국내에서도 케이블 TV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점차 서비스 융합의 초기 단계를 뛰어 넘어 휴대폰을 이용한 위성 DMB 서비스의 본격적 실시와 IP-TV등의 뉴미디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형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 되었음.
- 미국은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으며, 영국은 1996년 방송법 (Broadcasting Act)을 제정하여 방송에서의 규제완화를 도입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003년에는 통신과 방송의 통합법 (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여 통합규제기구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을 만들었음. 한편,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워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프랑스도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유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전자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 2004년 7월 ‘전기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관한법’을 통과시켰음. 특히 EU가 2002년의 Framework Directive등을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규제 체계 마련을 각국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님.
- WTO 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으로서 현재 시장 개방논의가 진행 중인 ‘도하 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

터 전세계를 상대로 통신 분야의 공세적 시장 개방 요구와 방송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등 방송과 통신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어지고 이에 따른 시장 개방과 규제 시스템의 단일화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지는 추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법을 제정, 방송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가의 정체성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본 법안은 시장과 산업 논리로부터 바로 그러한 ‘방송의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의 방송환경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송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방송통신의 융합의 고도화에 따른 뉴미디어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에 있으므로, 첫단계로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하고, 향후 방송통신융합법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

방송통신융합 추진일정

1단계 : 2004년 11월 국가기간방송법 제출

2단계 : 방통융합 제도화를 위한 국회내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문광위, 과기정위)

3단계 : 2005년 3월 방통법안 제출

- 1980년초 방송통폐합은 공영방송강화가 핵심적 목표로 방송체제를 개편했으나, 현재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지 못하고,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의 위상을 제고, KBS를 BBC와 NHK에 버금가는 국제적 방송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원칙

1.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방송의 독립성 확보
2.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및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3.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방송으로의 위상 강화

□ 주요내용

1. 국가기간방송의 위상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 제정
 - KBS는 방만한 경영, 방송의 오락프로그램 및 선정성 심화, 과도한 광고수입의 의존등 지배구조 및 채용구조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구조적으로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준립근거가 미약하고, 감사원 및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 합치하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함.(1조)
 -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법을 분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국가기간 방송에 관한 법으로 통합하여, 공영방송 위상 및 역할을 강화시키는 단일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영국의 BBC, 일본의 NHK등 세계적 공영방송에 버금가는 한국의 대표적방송으로 강화시키고자 함.(2조)

※ 국가기간방송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간방송공사’를 신설, 산하에 KBS, EBS를 자회사로 각각 설치하는 안도 있을 수 있지만 KBS의 경영위원회나 EBS의 이사회가 공익을 위한 수탁기관으로서 시청자를 위한 방송 여부를 감독하며 이에 대해 KBS, EBS로 하여금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간방송공사 산하의 자회사로서 간접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더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는 데에 수월하다고 판단하였음. (국가기간방송공사 산하의 자회사로 KBS, EBS가 존재하게 되면 별도의 법인인 KBS, EBS는 결과적으로 간접 책임을, 국가기간방송공사 자체는 직접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리 구성이 복잡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

2. 국가기간방송의 위상강화를 위한 경영위원회 제도 도입

- 경영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

왜 경영위원회인가?

경영위원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집행기관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KBS 자체의 위상과 성격을 지킴으로써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적 제도임

- (1) 경영위원회는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임(8조)
- 기존의 이사회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위원회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임.(8조)
-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이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

관으로서 주요 경영 방침을 혼자서 결정하고 KBS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개인의 성향에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현재의 법구조를 개선, 영국 BBC 방송에서와 같은 **경영위원회 (Governors)**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더 나아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도록 함.(8조)

- ※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귀감이 되고 있는 영국 BBC의 경우 ‘경영위원회’ (Board of Governors)는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행하도록 공익의 수탁기관으로서 BBC를 규율하고 시청자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경영 평가에 따라 사장을 임명/해임할 수 있음.
- ※ 독일의 공영방송 역시 연방헌법재판소가 1961년의 제 1차 방송판결에서 “모든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기구의 구성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로 다원적 구성을 통해 편파적 영향력 행사를 막고 제반 생활 영역의 다양한 세계관과 사안이 프로그램을 통해 표출되도록 보장하게끔 하고 있음. 즉 방송평의회 (Rundfunkrat)는 방송사의 내적 통제기구임.
- ※ 한나라당 법안의 경영위원회 역시 KBS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기구로 규정함. 경영을 위한 큰 방향을 시청자와 공익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이를 집행할 사장을 임명, 해임하게 되며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와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장 1인을 통해 가해질 수 있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경영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차단시켜 줄 수 있고 경영위원회의 보호막 아래에서 KBS 경영 방침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며, 경영위원회는 공익을 위한 KBS가 될 수 있도록 사장을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2)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분화

○ 경영위원회는 공익의 수탁자로서 KBS가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위상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사장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경영 방침'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간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었음(8조,12조).

※ 현재 KBS 이사회와 사장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됨으로써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자 할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경영위원회와 사장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3) 경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1) 국가기간방송의 경영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

○ KBS의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사장, 감사를 임명, 해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서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추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8조 2,4항)

○ 경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국회의 추천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특정 교섭단체(여당)의 경영위원에 대한 사실상 독식이 이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실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7:2 내지 6:3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주요 정책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8조 2,4항)

○ 정치적 독립 및 합리적 경영이 보장받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

민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의 경영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1/2을 넘지 못하게 함(제8조 5항)

-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KBS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꾀할 수 있으며,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음. 위원은 전문성 및 지역,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토록 하였고, 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등이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음. 아울러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상반되는 직위에 있는자, 정치 활동 종사, 불성실한 직무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임의결토록 함. 상임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정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송법상의 독립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제8조 3항, 제10조 2항)
- 따라서 ‘국회의 추천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방식이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탁기관적 성격’ 구현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여짐. 다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특정 교섭단체의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또한 효율적 경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집단에서의 추천이 2/3를 넘도록 규정하였음.(제8조 5항)

3) 동일한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제8조6항)

- 경영위원회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동일한 교섭단체에서 2인을 동시에 추천할 수 없게 하였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공적 의무 수행을 하게 하였음.(제8조6항, 제9조1항)

4) 정기회의록의 공개를 통한 경영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경영위원회의 정기 회의록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토록 함(제8조 9항)

3. 국제적 수준의 순수 공영방송으로 재원 구조 개편

- 광고비율 20% 미만으로 점진적, 단계적 축소

- 현재 KBS는 공적재원 50%미만의 사실상 상업적 공영방송이므로, 재원구조의 개편을 통한 순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함(감사원지적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 공영방송 (공적재원 80%이상, 광고수입 10% 미만)
- BBC(영),NHK(일), ARD(독일)○ 혼합적 공영방송 (공적재원 50%이상, 광고수입 30% 미만) - FT(프) 등○ 상업적 공영방송 (공적재원 50%미만, 광고수입 30% 이상) - KBS 등 |
|--|

<출처:감사원>

- KBS의 재원은 시청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방송수신료가 주가 되도록 수신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피하되, 동시에 현재의 방송광고수입 비중은 일정 비율(전체 예산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18조 2항).

-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이 확정되고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되는 것을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함. 즉,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가 예산 편성과 결산시 국회에 보고, 승인을 받도록 함(19조, 20조, 27조1항)

- 감사원과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예결산 승인이 되도록 예결산 검증 절차를 둠(21조).

-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함(19조).
- KBS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수신료는 경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재정수요 규모를 조사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함. 이를 공사가 부과 징수토록 함. 각 방송사 예산규모의 적절한 공적 재원 비율의 확보를 위해 수신료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1조 1항 6목, 제27조).
-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 선진국 등 세계 50여개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주된 운영재원임.

4. 신규사업 진출시 방송위원회 심의

- 타 매체에의 출자 및 신규 사업 참여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제 16조 3항).
- 일본 NHK의 경우, 위성 DMB 재송신 허가시 총무성의 인가를 통해 이루어졌음. KBS가 뉴 미디어 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방만한 사업 확장 및 지상파 독과점의 제한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함. 영국의 BBC도 2003년 Communications Act에 의해 Ofcom의 규제를 받게 됨

5. 통일 방송으로서의 역할 강화

- “...통일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남북 방송 교류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제 6 조 4항)

6. EBS의 공영 방송 - 전문성 강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되,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EBS는 이사회가 공익의 수탁자로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며,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또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가운데 E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 현재 이사회 심의·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며, 이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EBS의 예산 편성과 결산 승인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으로 함.
- 사장은 회계연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결산서를 방송위에 제출, 방송위는 이를 총괄하여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EBS재원의 범리상 문제점 정비 : KBS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EBS가 존재하고 있는 범리상 KBS의 방송수신료를 EBS의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법적 문제점을 ‘국가기간방송’의 틀속에서 KBS, EBS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결토록 함.
- EBS와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아리랑 TV’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KBS의 월드와 아리랑 방송은 국제방송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방송의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통합되어야 함. 이를 위한 근거 규정임(제30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신문법안 비교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비고
명칭	신문등의자유에관한법률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한나라당안은 명칭에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자유를 규정. 반면 여당안은 독자의 권익에 중점을 둠.
기초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 계승	1980년 신군부 집권시 제정된 언론기본법 다수 원용	
원칙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 보장	최대한의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언론자유	한나라당안은 총 21조, 여당안은 총 47조로 구성. 여당안은 과도한 규제 위주.
발행	신고제	등록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보다 신고제가 바람직.
시설기준	‘윤전기 의무화’ 등 기존 시설 기준 삭제	인쇄소와 인쇄계약 체결 혹은 자가적 인쇄시설 확보 의무화	
경영	허용	금지	신문방송 경영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임. 경영을 통한 신문시장 점유율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경영조건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경우 방송사업 지분 10% 이내 가능		과도한 시장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경영허용
시장점유율	인수합병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여당안은 공정거래법상 타기업과 차별성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음.

인터넷 신문	포함	포함	인터넷 언론도 제도권에 수용
편집규약 ·위원회	자율적 구성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편집위원회를 통한 강제적 편집규약 제정은 편집권 독립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편집권 간섭으로 위헌 적 요소임.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비교
독자 권익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회의 를 열어 지면에 반영할 수 있 음 (강제조항 아님)	편집위원회가 절반을 추천하는 독자권 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월 1회이상 회 의를 통해 편집, 기사에 대한 의견 제 시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내부심의기구, 고충처 리인 등 독자권익을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가 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억압과 탄압임.
불공정 거래 제재	부당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적용)	부당거래행위 금지 (대통령령으로 범위 규정)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 할 필요가 있음.
광고	규제 조항 없음	광고와 기사의 명확한 구분 의무화 광고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 리 등을 침해할 경우 게재 거부 가능 광고비율 50% 이하로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은 언론기본법에도 있던 독소조 항임. 지면과 광고의 편집에 관한 부분은 독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선량한 풍속'등 모호한 기준의 적용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 광고비율의 50%이하 제한은 언론기본법 제정시에도 검토만 하 고 제정은 포기했던 조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자료 공개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총발 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 수입, 구독료수입 내역 공개	발행·판매·인쇄부수, 구독료,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지 분총수와 자본내역, 50% 이상 지분 소유자 개인별 내역 등 문화관광부 장	여당안은 정부가 신문사의 모든 경영자료를 보고받 게 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한 관치 언론화 우려.

		관에게 신고	
언론 진흥원	관련 조항 없음 다만,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기 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	9인의 이사로 구성(국회의장 2명, 언 론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추천 포함) 신문발전기금 운용, 여론의 다양성 보 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주요시책 자문	언론진흥원은 구성상 독립성 여부에 문제가 있음.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규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고를 주재원으로 하 는 만큼 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신문 발전 기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하되 출연 금은 신문광고에 부과되는 부 가세 중 일부로 조성하도록 유 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신문 및 인 터넷 신문의 진흥, 유통구조 개선 등 에 사용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언론중재법안 비교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비고
명칭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언론은 중재의 당사자일 뿐 가해자가 아님에도 여 당안은 명칭부터 언론이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처럼 묘사되어 있음.
언론 중재위	40~90명,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50%, 언론종사자(15년 이 상) 25%, 언론 관련 교수 (부 교수 이상, 강의 10년 이상)	60~110명, 법관 20% 이상, 변호사 20% 이상, 언론사 직원 출신(노조출신 등) 2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	여당안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실제로 위촉 주체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노조와 시민단체만으로 도 60%를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한나라당안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전

	25%		문성을 가지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음.
정정·반론 보도청구	기존 정간법의 반론보도청구를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구분	정간법상 반론보도청구와 동일.	여당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정간법에 손해배상 중재 관련조항만 삽입한 것으로 손해배상 중재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의도가 엿보임. 중립성이 의심되는 중재위가 손해 배상액수까지 중재하도록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음. 한나라당안은 기존의 반론보도청구를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어 모호하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중재’를 ‘조정’으로 하고, ‘중재’의 법적효력을 강화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음.
조정	기존 정간법의 중재와 동일	관련조항 없음	
중재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신청 가능	기존 정간법의 중재와 동일	
손해배상 중재	관련조항 없음	중재부에서 손해배상 중재 가능 손해배상 액수까지 중재 가능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시정권고	중재부	중재부	기존 정간법에는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정권고 신청	관련 조항 없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청 가능	여당안은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매체에 대한 정부와 친여 시민 단체의 무차별적 시정권고 신청이 우려됨.

언론피해 상당소	관련 조항 없음	국고보조를 받음. 언론피해 상담, 중재신청, 피해배상청구, 소송절차 등 지원	여당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상당소를 따로 설치하고 국고까지 투입하여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언론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중복·낭비가 우려됨.
내부 심의기구	자율적 언론분쟁조정인 제도	보도 및 광고에 대한 심의 기구 의무화 고충처리인 제도 의무화	여당안은 신문사의 자율적인 사안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도 신문사 내부적으로 Gate Keeping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음.
양벌규정	관련 조항 없음	위반행위 발생시 당사자 뿐 아니라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가할 수 있음.	여당안은 개인의 잘못으로 법인까지도 제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문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소지가 있음. 이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임.

여당 법안의 언론기본법 원용 사례

언론기본법	여당법안	비고
<p>제2조(언론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p>	<p>신문법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p> <p>언론피해구제법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p>	<p>바꾸어 말하면 다른 법률로써 신문의 편집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p>
<p>제3조(언론의 공적 책임) 언론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책임을 수행한다.</p>	<p>신문법 제4조(정기간행물등의 사회적 책임)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p> <p>언론피해구제법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2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p>	<p>언론기본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공적 책임’이란 명분하에 각종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던 조항임.</p>
<p>제10조(광고 구분 표시) 신문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과 광고책임자는 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p>	<p>신문법 제10조(광고 구분 표시와 분량제한) 정기간행물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의 편집인은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p>	<p>여당법안에 추가된 분량 제한의 경우 언론기본법 제정시에도 검토만 하고 제정은 포기했던 조항일</p>

시 또는 구분하여야 한다.	편집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항임.
언론기본법	여당	비고
제12조(재산상황 공고 및 자료 제출) 신문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매년 말 당해 언론기업의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법 제15조(경영 및 영업자료 신고) 정기간행물 사업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2. 구독료와 광고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당법안의 경우 경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신문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큼.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신문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을 가한다 언론피해구제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을 가한다	개인의 잘못으로 법인까지도 제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문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소지가 있음. 이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임.